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 자료제공 / 국세청 · 중소기업청

연재순서

- | | |
|---------------------------------|---------------------------|
| 1. 가업승계와 상속세·증여세 |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
| 2. 기업상속공제 제도 | 6. 가업승계 Q&A |
|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
| 4. 창업자금을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및 주식 할증평가 | |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는 회원사가 늘어남에 따라 가업승계가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자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연간 매출액 1,500억원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시 10%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했다. 본지는 정부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연재한다.[편집자주]

가업승계와 상속세·증여세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가업승계와 관련

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1.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01 가업상속공제 제도

- ▶ 상속세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상증법 §18②)
 - 적용대상 : 1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적법하게 상속
 -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함
 - *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억, 15년 이상시 80억, 20년 이상시 100억원 한도

02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 증여세 경감으로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조특법 §30의6)
 - 적용대상 : 18세 이상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가 운영하는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주식을 2013.12.31. 까지 증여받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 특례내용 :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 * 일반 증여재산은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공제, 10~50% 세율을 적용

03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 자녀에게 창업자금 지원 시 증여세 경감(조특법 §30의5)
 - 적용대상 :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2013.12.31.까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 시
 - *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 증여재산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

04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 ▶ 상속·증여세 감면으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조특법 §101)
 - 적용내용 : 중소기업 주식을 '12.12.31. 이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주식이라도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 * 일반적으로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 시가 등에 일정률을 할증 평가하여 과세 (상증법 §63③)
 - 중소기업 주식 : 10% (지분율 50% 초과 시 15%) 할증평가
 - 일반기업 주식 : 20% (지분율 50% 초과 시 30%) 할증평가

05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 ▶ 가업상속분 상속세 납부 편의 제공 (상증법 §71)
 - 적용대상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 지원내용 : 가업상속재산 해당 상속세액은 장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압박 해소
 - 총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점유비율이
 - 50% 이상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가능
 - 50% 미만 :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임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

01 가업승계와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의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에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속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
-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을 그의 후계자에게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상속시키는 것이므로
 - 가업을 승계시키는 때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02 상속세 과세제도

1) **납세의무자** :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사망으로 유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 상속인(相續人) : 민법상 상속인을 말하며, 생전 증여재산 등이 있어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와 유산을 수령한 특별언고자도 상속인임

• 수유자(受遺者) :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계약에 따라 유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함

-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게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그러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납된 경우 그 미납된 상속세는 각자가 받게 되는 재산가액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납부할 책임도 있는데, 이를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라고 한다.

참고 :: 법정 상속 순위

1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 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3 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4 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 * 동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친수가 다르면 친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친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됨

참고 :: 법정상속분 예시(민법§1009조)

구분	상속인	민법상법정상속분	
		상속분	배분율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2/7
		장녀 1	2/7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장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3/7
		장남 1	2/11
		장녀 1	2/11
		2남 1	2/11
		2녀 1	2/11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배우자 1.5	부 1	2/7
		모 1	2/7
		배우자 1.5	3/7

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 상속개시일(사망일·실종선고일)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예시 | 상속개시일 2011.1.10.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1.7.31.임

- 상속세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함

3) 상속세 신고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 입증서류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및 그 평가명세서
 • 기타 기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4) 상속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상속세 신고·납부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이행해야 한다.
 -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03 증여세 과세제도

- ### 1) 납세의무자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 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 비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2)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증여재산을 취득한 날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등기·등록일
- 동산 및 기타재산 :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증여일 2011.1.10.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1.4.30.임

- 증여세 납부기한
 -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3)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4)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한다.
-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04 세액의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 (공과금) - (채무) - (장례비) - (각종 상속공제액)
-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하는 재산
-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니면 5년)에 증여한 재산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상속세·증여세 세율(2000.1.1. 이후)

과세표준	상속·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05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편의 제도

1) 분납제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 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이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물납제도

-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물납제도라고 한다.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기한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으로는 물납할 수 없으나 상속세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한다.

06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진다.

1) 10%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고세액 공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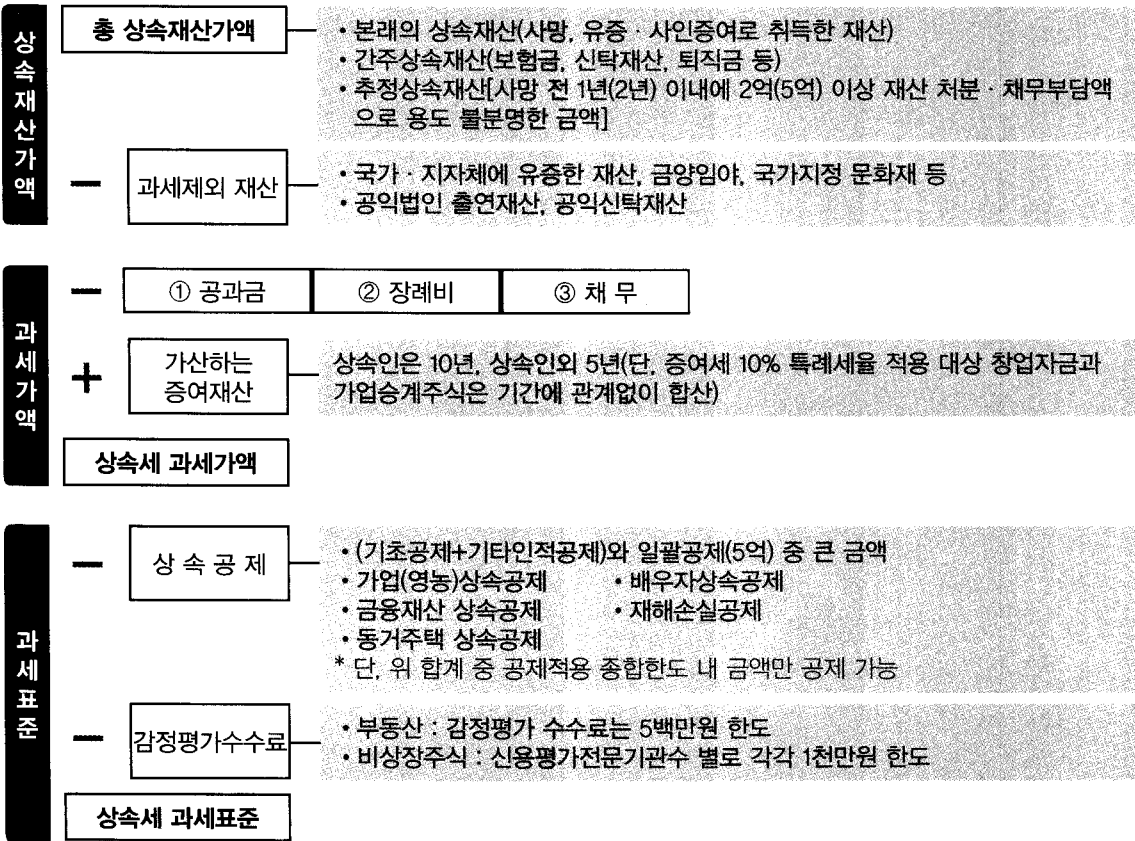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2)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따라서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 계산 흐름도



산출세액	×	세율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분 30% 할증 (대습상속은 할증안함)

세액공제	-	①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② 증여세액 공제	③ 외국납부 세액공제	④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⑤ 신 고 세액공제
------	---	-----------------	--------------	----------------	-----------------	---------------

납부할세액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차가감 납부할 세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부연납·물납 세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 현금납부 〉 분납 / 신고납부 세액</td> </tr> </table>		차가감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물납 세액	=
차가감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물납 세액	=	〈 현금납부 〉 분납 / 신고납부 세액		

상속공제액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은 아래 ①~⑦ 합계와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의 종류	공제의 종류
① 기초공제 (상증법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액 : 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MAX (㉗, ㉘) · ㉗ 가업상속재산가액 × 40% (60억원~100억원 한도*) ·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60억, 15년 이상 80억, 20년 이상 100억 · ㉘ 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한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 영농상속공제액 : 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 : 2억원)
② 그 밖의 인적공제 (상증법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5백만원 × 20세까지의 잔여년수 ·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3천만원 · *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 장애자수 × 1인당 5백만원 ×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③ 일괄공제 (상증법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공제액 : MAX (㉗, ㉘) · ㉗ 5억원 ㉘ (기초공제 2억원 + ②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적용 안 됨 · *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 : 일괄공제(5억원) 적용
④ 배우자상속공제 (상증법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상속공제액 : MAX (㉗, ㉘) · ㉗ MIN (㉙, ㉚) · ㉙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총재산가액-비과세·채무 등) · ㉚ 공제한도액 : MIN (i, ii) · i)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ii) 30억원 · ㉘ 5억원 · * ㉗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시 적용 (부득이한 경우 상속재산분할기한 경과후 6월되는 날까지 신고)

공제의 종류	공제의 종류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증법 §22)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 2천만원 초과시 : MIN (㉗, ㉘) • ②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㉙ 2억원 • 2천만원 미만시 : 금융재산가액 전액
⑥ 재해손실공제 (상증법 §23)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⑦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증법 §23의2)	공제액 :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 (5억원 한도) * 2009.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상증법 §24)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계산 흐름도 (기본세율)

증여 세 과 세 가 액	증여재산가액 (\$31 ~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한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46) • 불산입재산(\$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증여재산 가산액 (\$47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과 세 표 준	증여세 과세가액 (\$47)																			
	증여재산공제(\$53) 재해손실공제(\$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누계, 비거주자는 공제안됨 •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손실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영\$46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 비상장주식 : 신용평가전문기관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증여세 과세표준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신탁 과세시 : 증여재산 공제 없음 • 합산배제 증여재산 : 3천만원 공제 																		
산 출 세 액	× 세 율(\$5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과세표준</th> <th>1억 이하</th> <th>5억 이하</th> <th>10억 이하</th> <th>30억 이하</th> <th>30억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세 율</td> <td>10%</td> <td>20%</td> <td>30%</td> <td>40%</td> <td>50%</td> </tr> <tr> <td>누진공제액</td> <td>없음</td> <td>1천만원</td> <td>6천만원</td> <td>1억 6천만원</td> <td>4억 6천만원</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과세표준	1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30억 이하	30억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57)																		

세액공제	-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75)	기납부 세액공제 (\$58)	외국납부 세액공제 (\$59)	신고 세액공제 (\$69)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	-----------------------	------------------------	----------------------	-----------------

납부할세액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78)
		차가감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물납 세액 = < 현금납부 > 분납 / 신고납부 세액

증여세 계산 흐름도 (특례세율)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30억원도) (조특법\$30의5, \$30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 창업자금 : 양도소득세 대상(토지·건물 등) 수증시 해당안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주식 특례의 중복적용은 불가 - 거주자만 해당, 신청한 자만 적용
	-	채무액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 인수액
	+	기 특례적용된 과세가액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을 합산 *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합산 안함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기본세율로 과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 제해는 납공액	5억원 (조특법\$30의5 ①, \$30의6 ①)
	-	감정평가수수료 (상중평\$46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 비상장주식 : 신용평가전문기관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율(\$56)	10%
		증여세 산출세액	

세액공제	-	기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적용안함 (조특법\$30의5 ⑩)
------	---	-------------	--------------	---------------------------

납부할세액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창업자금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금액의 3/1,000)
		차가감 납부할 세액	- 물납 세액 (연부연납은 적용안함) = < 현금납부 > 분납 / 신고납부